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64

발의연월일: 2024. 6. 26

발 의 자:황명선·송재봉·염태영

김남근 · 김준형 · 신영대

송옥주 · 모경종 · 이해식

윤준병 • 안규백 • 정일영

주철현 · 박희승 · 이재관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, 내연자동차 주유소는 주유관리원 등을 두고 있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주유를 할 수 있는 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에는 무거운 케이블과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장애인이 충전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임.

이에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

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 는 것임(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).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말한다"를 "말한다. 이하 같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해당 대상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11 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대상시설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		
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	전용주차구역 등) ①	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			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		
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			
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			
우에는 관리자를 <u>말한다</u>)는 대	<u>말한다. 이하</u>	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같다		
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			
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			
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⑫ (생 략)	② ~ ⑫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		
	자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편의		
	성을 고려하여 해당 대상시설		
	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		
	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		
	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		
	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		